

1991. 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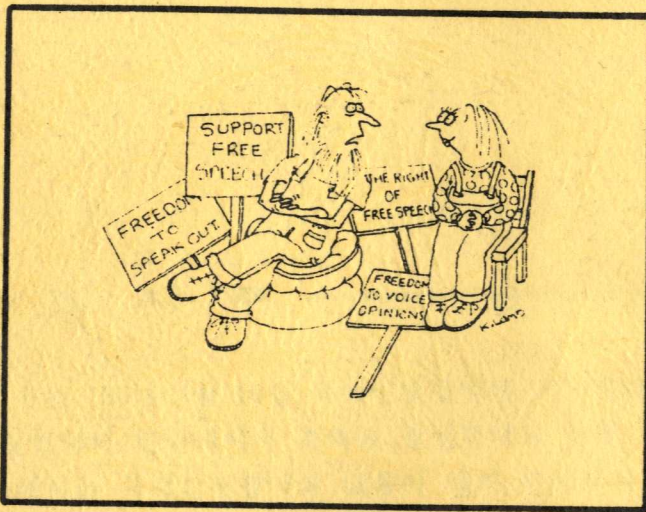
특집

국제앰네스티

Ia1.21

국제인권규약 정부번역문의 검토

박홍규 저 (영남대 법대교수)



21

국제앰네스티 한국조절위원회

목 차

머리말	1
1.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43
맺음말	47

편 집 자 주

한국 정부는 '90년 4월 10일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했다.

국제인권협약이 한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한지도 벌써 1년, 그러나 한국내에서는 국제인권협약의 내용이 널리 홍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권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 왔다. 이에 국제인권협약의 각 사안들을 숙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소식지 복간 15호로 국제인권협약을 중심으로 한 특집호를 다루고자 한다.

머 리 말

국제조약은 정확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인권규약은 헌법을 비롯한 인권관계 국내법의 기준으로 직결되는만큼 그 번역의 정확성이 갖는 의의는 막중하다. 그러나 관보 제 11548호¹⁾에 공포된 정부번역본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명백한 오역도 있고,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생경한 직역도 있으며,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불필요한 한자어 등도 눈에 띈다. 자연스럽게 유려한 번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될 정도이나 이미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것이므로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소한 수정되어야 할 부분만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앞으로는 헌법이나 법률은 물론 중요한 조약의 번역문장은 공포 이전에 학계나 법조계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침이 요구된다고 본다.

번역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나, 국제인권규약을 A·B규약으로 나누어 부르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 곧,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A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B규약으로 부르는 태도이다. 이는 일본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 없는만큼 세계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나는 평소 전자를 사회권 규약, 후자를 시민권 규약으로 약칭하여 왔다. 이러한 약칭에도 문제점이 있으나 그외 다른 적절한 명칭이 없다. 한국에서는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으나 자유의 요소는 어느 권리에든 있다. 따라서 자유권이란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나는 시민의 차원에서 모두에게 인정되는 일반적인 권리와 사회의 차원에서 특정집단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시민권과 사회권으로 분류하여 왔다.

1) 1989년 10월 5일 제 39회 국무회의에서 심의되고 1990년 3월 16일 제 145회 국회(임시)에서 동의되고 1990년 4월 10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최호중 외무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하고, 1990년 6월 13일 공포되고, 1990년 7월 10일부터 한국에서 효력이 발생됨. 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경우 제 14조 5항, 제 14조 7항, 제 22조, 제 23조 4항을 유보하고 제 41조의 효력이 승인됨.

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정부번역문에 나타나 는 기본적인 문제점은 제 1·25조의 민족자결권의 주체가 '민족'이 아니라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고, 반면 그 외의 여러 조문에서는 국적을 갖는 '국민'을 뜻하는 nationals가 '민족'으로 번역된 점, '신분' '가문' 등의 봉건적 용어가 부정확하게 사용된 점, 처벌강제조항이 처벌가능조항으로 오역된 점 등이다. 이러한 오류는 국제인권규약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번역한 탓으로 이해된다.²⁾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졸속하게 이루어진 이러한 번역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단순히 번역기술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해석의 오류도 초래할 수 있다.

(1) 전 문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 문 제 점 >

첫째 2행의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이란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

2) 정부는 국제인권규약의 비준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적어도 1981년의 북한에 의한 비준 이후부터라도 그것을 연구하고 국내법과의 차이 등을 검토해야 했다. 한편 언론이나 학계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적어도 국제법학회는 그것에 대한 전국 세미나를 열고 조약번역부터 시도하고 그 주석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시도는 이 글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성'이라고 함이 자연스럽다.

둘째 6행의 '자유인간'이란 'free human beings'의 번역인데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으로 생각되며 '자유로운 인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10행의 '타개인'이란 'other individuals'의 번역인데 '타인'이라고 함이 자연스럽다.

(2) 제 1 부 민족자결권

제 1 조 민족자결권

< 정부번역문 >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문 제 점 >

첫째 제 1조는 소위 민족자결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주체는 'all peoples'이고 그 번역으로는 집단을 뜻하는 민족, 민중 또는 인민이 적당하지, 다른 조문에 나오는 'everyone'의 번역어인 '모든 사람'(이는 집단이 아닌 개인을 뜻한다)은 적합하지 않다. 정부번역문은 제 1조의 all peoples 와 기타 조문들의 everyone을 모두 '모든 사람'으로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제 1조의 본질과도 관련되는 오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 3항 3행의 '동 권리'란 'that right'의 번역이나 '그러한 권리'라고 함이 자연스럽다. 조약원문은 앞에서 언급된 (동일 조문 내에서) 권리를 다시 칭하는 경우 this(예컨대 제 6조), that(예컨대 제 2조), such(예컨대 제 5조), those, these(예컨대 제 4조) 등을 사용하는데 정부번역문은 such, this와 that은 '동', those, these는 '그러한'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한’으로 통일됨이 옳다.

(3) 제 2 부 일반규정

제 2 조 당사국의 규약실시의무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 문 제 점 >

첫째 제 2항 2행의 ‘민족적’이란 ‘national’의 번역인데 국적상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므로 (곧 3항의 외국인조항과 대응된다) ‘국민적’이라고 번역함이 타당하고, 3행의 ‘신분’이란 봉건적인 용어이므로 원어인 ‘status’를 ‘지위’로 번역함이 타당하다.

둘째 제 3항의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란 ‘non-nationals’의 번역인데 통용어인 ‘외국인’으로 번역함이 타당하다.

제 3 조 남녀의 평등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 4 조 일반적 복지에 의한 제한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

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문 제 점 >

3행의 ‘공공복리’란 ‘general welfare’의 번역으로서 ‘일반적 복지’라고 번역함이 옳다. ‘공공복리’란 보통 public welfare 의 번역이다. 예컨대 제 8조에서 ‘public order’가 ‘공공질서’로 번역되고 있음과 같다. ‘공공복리’란 한국헌법 제 32조 2항의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라고 이해되나 반드시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 ‘general’을 ‘공공’이라고 함도 문제이나 ‘welfare’를 ‘복지’라고 함도 일반적이지 못하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경우의 ‘복지’가 더욱 적합하다.

제 5 조 해석적용상의 주의사항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문 제 점 >

첫째 제 1항의 끝은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하기 보다는 ‘해석될 수 없다’라고 함이 더욱 자연스럽다.

둘째 제 2항 1행의 ‘협정’이란 ‘conventions’의 직역이나 보통 ‘조약’을 뜻하는 것이다 (곧 협정을 포함하는 국제법으로서). 그리고 4행의 ‘동’이란 무리한 한자어로서 ‘그러한’으로 바꿈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4행의 ‘훼손’이란 ‘derogation’의 번역이나 법률용어로는 ‘유보’라고 함이 적절하다.

(4) 제 3 부 실체적 권리규정

제 6 조 노동권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문 제 점 >

첫째 제 1항에서 'work'가 '노동'과 '근로'라는 두가지로 번역되고 있다. 그리고 제 1항에서는 '근로의 권리', 제 2항에서는 '근로권'이라는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노동'이란 '일하는 것'이나 '근로'란 '열심히 일하는 것' 곧 'hard work'의 번역이다.

헌법상 근로란 말이 쓰여짐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뿌리는 일제시의 '근로'보국대에 있다) 이제는 노동이란 말로 통일시킴이 옳다. 따라서 노동, 노동권이란 용어를 씀이 타당하다.

둘째 제 2항 2행의 '제반'이란 '여러'로 고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것이 우리말 애호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제 2항 5행의 '기술'이란 4행의 '기술'과 혼동될 수 있다. 4행의 '기술'은 직업적 기술이나 5행의 그것은 정책적 방안 내지 방법을 뜻한다. 따라서 6행의 '기술'은 '방법'으로 고침이 옳다.

넷째 제 1항 3행의 '동'은 '그'로 바꿈이 자연스럽다.

제 7 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유하는 권리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

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을 보장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 문 제 점 >

첫째 (a)의 '최소한'이란 'minimum'의 번역이나 보통 '최저한'이라고 번역된다. 곧 '최저'노동기준이라고 하는 등이다. '최소한'이란 규약의 노동조건을 '최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도 한다.

둘째 (a) (i)의 '동등'이란 'equal'의 번역이나 보통 '동일'이라고 번역된다.

셋째 '근로조건' '근로자'도 '노동조건' '노동자'라고 함이 옳다.

넷째 (b)의 '건강한'이란 'healthy'의 직역이나 법용어로는 '위생적인'이라고 함이 더욱 구체적이다.

제 8 조 노동단체권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와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문제점 >

첫째 제 1항 (d)의 '특정국가'란 '자국'으로 고침이 자연스럽다.

둘째 제 2항의 '행정관리'란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s'의 번역이나 '행정부의 구성원'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나 하는 것은 공무원의 노동단체권 인정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ILO 제 151호조약 제 1조 2항은 그것이 행정부내의 공무원으로서 "그 임무가 정책결정 또는 관리에 관계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의무가 고도로 기밀적인 성격을 갖는 사람"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제 3항 2항의 '동'도 '그'로 고침이 자연스럽다.

제 9 조 사회보장권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 10 조 가정 등의 보호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

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2. 임신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중의 근로 임신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 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협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 문제점 >

첫째 제 3항 1항의 '가문'이란 parentage의 번역이나 법적으로는 출생에 따른 차별, 곧 혼인중의 자이나 혼인외의 자이나의 구별을 뜻하는 것이므로 '출생'으로 번역함이 옳고, 가문이란 봉건적인 용어이고 법개념이 아니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제 3항 7항의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은 'should be punishable'의 명백한 오역이므로 '처벌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정부역에 의하면 처벌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

9항의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도 'should be punishable'의 오역으로서 '처벌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제 11 조 기본생활권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a)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제 12 조 건강권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 문제점 >

첫째 제 2항 1행의 '동'이란 '제 1항의'로 고침이 옳다.
둘째 제 2항 (a)에는 원문의 'The provision'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a)의 끝에 '발육을 위한 대책'이 첨가되어야 한다.

제 13 조 교육권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 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문제점 >

첫째 제 1항 6행의 '민족간'이란 'nations'의 번역이나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의미에서 국적을 갖는 '국민간'으로 번역함이 옳다. 하나의 국민에도 많은 민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제 2항 1행의 '동'은 '제 1항의'로 바꿈이 옳다.

제 14 조 의무교육의 실시의무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

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 15 조 문화권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 문 제 점 >

제 4항은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와 협조의 장려와 발전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로 고쳐야 한다. 원문은 “recognize the benefits to be derived from the encouragement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tacts and co-operation in the scientific and cultural fields”이다.

(5) 제 4 부 절차규정

제 16 조 보고서의 제출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a)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 (b)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연합전문

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전문기구의 창설규정에 따라 동 전문기구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우, 동보고서 사본 또는 그 내용중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동 전문기구에 송부한다.

제 17 조 보고서의 제출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전문기구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이 규약상의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이 이미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에 관련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언급으로서 족하다.

제 18 조 보고서의 제출

< 정부번역문 >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국제 연합헌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이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9 조 보고서의 송부

< 정부번역문 >

경제사회이사회는 제 16조 및 제 17조에 따라 각 국이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및 제 18조에 따라 전문기구가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중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검토, 일반적 권고,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 할 수 있다.

제 20 조 의견의 제출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당사국과 관련 전문기구는 제 19조에 의한 일반적 권고에 대한 의견 또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문서에서도 그와같은 일반적 권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1 조 보고서의 제출

< 정부번역문 >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2 조 주의의 환기

< 정부번역문 >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규약의 제 4부에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국제연합의 타기관, 그 보조기관 및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여하는 전문기구가 각기 그 권한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실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 문 제 점 >

위 정부역에서는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기구로만 규정되나 원문에서는 국제연합의 타기관과 그 보조기관도 기술원조의 제공과 관련된다. 따라서 2·3행의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여하는'이란 귀절은 2행의 '국제연합' 앞에 와야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국제연합의 타기관 등의 범위가 확정되어 그것이 의미를 갖게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other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heir subsidiary organs and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with furnishing technical assistance"이다.

제 23 조 국제적 조치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협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및 관계정부와 협력하여 조직된 협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별 회의 및 기술적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 24 조 타규정과의 관계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문 제 점 >

1행에서 '취급되는 문제'란 'matters dealt with'의 직역이나 '규정된 사항'이라고 번역됨이 타당하다. 그리고 3행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도 'impairing the provision'의 직역이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번역됨이 보다 자연스럽다.

제 25조 민족자결권의 보호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문 제 점 >

앞에서 본 제 1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행의 '모든 사람'이란 'all peoples'의 번역이나, '모든 민족'으로 번역됨이 타당하다. 그리고 2행의 '충분히, 자유로이'는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고유의'도 '고유한'으로 번역됨이 더욱 자연스럽다.

(6) 제 5 부

제 5부(제 26-31조)는 정부번역문에 큰 문제가 없다 ('동'이라는 한자용어 외에). 이하 제 5부의 정부번역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26 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

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 27 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 28 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29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할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30 조

제 26조 제 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 조 제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 (a) 제 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 27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 29조에 의한 개정의 발효일자

제 31 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 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일천구백육십육년 십이월 십구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서명란은 생략)

2.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정부번역문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문제점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문제점과 거의 같다. 곧 제 1·47조에 규정된 민족자결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이어야 하고, 기타 다수 조항의 nationals는 ‘민족’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며, ‘신분·가문’ 등의 봉건적인 용어가 사용된 점 등이다. 나아가 제 9조의 ‘구속’이 일본식으로 ‘억류’로 번역된 점은 한국법의 용어를 무시한 것이고, 두개의 규약에 나타난 같은 용어가 달리 번역된 경우도 있다. 특히 전문기구인 Human Rights Committee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인권위원회’로 불러 왔고, 같은 한자어권인 일본에서도 그것이 국제법용어로 정착되어 있으며, Committee란 어느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위원회로 부르거늘 정부번역문은 그것을 마치 회사조직이라도 되는 양 ‘이사회’로 부르고 있다(그러면서도 그 구성원은 ‘이사’가 아니라 ‘위원’으로 부른다). 기타 여러 가지의 어색한 번역이 눈에 띈다.

(1) 전 문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 문 제 점 >

첫째 2행의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이란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성’으로 고침이 자연스럽다.

둘째 6행의 ‘자유인간’도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고침이 자연스럽다.

셋째 10행의 ‘타개인’도 ‘타인’으로 고침이 자연스럽다.

(2) 제 1 부 민족자결권

제 1 조 민족자결권

< 정부번역문 >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문 제 점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조의 조문과 동일하므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앞에서의 논의도 동일하다. 그리고 제 3항 3행의 ‘동’이 ‘그러한’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앞에서의 논의도 여기서 다시 필요하다.

(3) 제 2 부 일반규정

제 2 조 당사국의 규약실시의무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 문제점 >

첫째 앞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조문 제 1항 3행의 '민족적'이란 '국민적'으로, 4행의 '신분'이란 '지위'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둘째 제 3항 (b) (c)의 '당국'이란 '기관'으로 바꿈이 자연스럽다.

제 3 조 남녀의 평등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 4 조 비상사태시의 예외

< 정부번역문 >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 6조, 제 7조, 제 8조(제 1항 및 제 2항), 제 11조, 제 15조, 제 16조 및 제 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 5 조 해석적용상의 주의사항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문제점 >

위 제 5조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5조에서의 문제점과 같은 것이 지적될 수 있다. 곧 제 1항의 끝은 '해석될 수 없다'로, 제 2항 1행의 '협정'은 '조약'으로, 4행의 '동'은 '그러한'으로, 4·5행의 '훼손'은 '유보'로 바꿈이 타당하다.

(4) 제 3 부 실체적 권리규정

제 6 조 생명권

< 정부번역문 >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문제점 >

제 6항 1행의 처음에 나오는 '규약'은 '조' article의 오역이다.

제 7 조 고문 등의 금지

< 정부번역문 >

1.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이거나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노예 등의 금지

< 정부번역문 >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 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의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

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국민적 요구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 문제점 >

제 3항 (b) 1행에서 "(a)" - 따옴표는 불필요한 것이다. 제 3항 (c) (i) 1행의 "(b)"도 마찬가지이다.

제 9 조 신체의 자유

< 정부번역문 >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문제점 >

첫째 제 1항 2행, 제 3항 1행 및 4행, 제 4항 1.2행, 제 5항 1행의 '억류'란 'detention'의 번역이나 한국헌법 제 12조 및 형사법의 용어로는 '구

속'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억류'란 일본정부역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일본헌법 제 34조에 나오는 용어이다. 그러나 한국법에는 그러한 용어가 없다.

둘째 제 3항 6행의 '출두 및'을 '출두하고'로 바꿈이 자연스럽다.

제 10 조 피구금자의 대우

< 정부번역문 >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 11 조 민사구금의 금지

< 정부번역문 >

어느 누구도 제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이동, 거주 및 출입국의 자유

< 정부번역문 >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외국인의 추방

< 정부번역문 >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 14 조 공정한 재판을 받는 권리

< 정부번역문 >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름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의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 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 15 조 소급처벌의 금지

< 정부번역문 >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법앞에 사람으로 인정받는 권리

< 정부번역문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에 인간으로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 프라이버시 등의 존중

< 정부번역문 >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8 조 사상 ·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정부번역문 >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 19 조 표현의 자유

< 정부번역문 >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 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 20 조 전쟁선전 등의 금지

< 정부번역문 >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 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 문 제 점 >

제 2항 1행의 '민족적'이란 'national'의 번역이나 '국민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곧 국적의 상위를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21 조 집회의 자유

< 정부번역문 >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 결사의 자유

< 정부번역문 >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문 제 점 >

제 1항 1행의 '결정'은 'to form'의 번역이나 '결성'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23 조 가정과 혼인에 관한 권리

< 정부번역문 >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중 및 혼인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24 조 어린이의 권리

< 정부번역문 >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 문 제 점 >

제 1항 1행의 '민족적'이란 'national'의 번역이나 국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국민적'이라고 함이 옳다. 그리고 2행의 '관하여'도 '따른'이라고 함이 옳다. 인종 등을 이유로 하여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인종 등에 '관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차별은 본래부터 있을 수 없다. 이는 분명한 오역이다. 나아가 3행의 '가족'이란 '가정'이라고 함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제 10조에서 '가정'이라고 한 것과 대응되는 것이라고 본다.

제 25 조 정치참여권

< 정부번역문 >

모든 시민은 제 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b) 보통, 평등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 26 조 법앞의 평등

< 정부번역문 >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 문 제 점 >

4행의 '민족적'이란 것도 국적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적'이라고 함이 옳다.

제 27 조 소수민족의 보호

< 정부번역문 >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5) 제 4 부 절차규정

제 28 조 인권위원회의 구성

< 정부번역문 >

-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 3. 이사회 의 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 문 제 점 >

정부번역문은 Human Rights 'Committee'를 인권 '이사회'로 번역하나, 이는 이미 학계에서 인권위원회로 통칭되고 있고, "Committee는 거의 언제나 위원회로 번역되는 통례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사회라고 하면서도 그 구성원은 이사가 아닌 위원이라고 번역한 점도 모순이다.

제 29 조 위원의 선출

< 정부번역문 >

- 1. 이사회 의 위원은 제 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 3. 동일인이 재지명 받을 수 있다.

1) UN 산하의 인권관계기구로는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Human Rights Committee가 있다. 나는 전자를 UN인권위원회, 후자를 인권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30 조 위원회 선출

< 정부번역문 >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 340 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 사회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당사국회담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 문 제 점 >

첫째 제 2항 4행의 '서면초청장'이란 'a written invitation'의 번역이나, 여기서 invitation이란 위원회가 당사국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명단을 제출하도록 권유·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권유서'라고 하거나 제 2항 4행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라고 바꿈이 타당하다.

둘째 제 4항 2행의 '회합'이란 'a meeting'의 번역이나 보통 사용되는 '회의'가 더욱 자연스럽다.

제 31 조 위원회의 구성

< 정부번역문 >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 문 제 점 >

제 2항 1행의 '위원'이란 'member'가 아닌 'membership'의 번역으로서는 부적당하므로 '위원구성'이라고 함이 옳다. 그리고 2행의 '주요한'도 '중요한'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제 32 조 위원의 임기

< 정부번역문 >

1. 이사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9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을 최초 선거후 즉시 제 30조 제 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 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 33 조 위원의 궐석

< 정부번역문 >

1. 이사회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궐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궐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궐석을 선언한다.

< 문 제 점 >

첫째 제 1항 3행의 '생각할'이란 'opinion'의 번역이나 '인정할'이라고 봄이 보다 자연스럽다.

둘째 제 2항 3행의 '좌석'은 'The seat'의 번역이나 '위원직'이라고 함이 자연스럽다.

제 34 조 보궐선거

< 정부번역문 >

1. 제 33조에 의해 궐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궐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궐석 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궐석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 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 당사국에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제 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 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결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결석위원의 잔여임기동안 재직한다.

< 문제점 >

제 3항의 '선언되는'은 '선언된'이라고 함이 자연스럽다.

제 35 조 위원 보수

< 정부번역문 >

이사회 위원들은 국제연합총회가 이사회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 36 조 위원회의 직원 등

< 정부번역문 >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 효과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 문제점 >

1행의 '이 규정상'은 어색한 표현이다. '위원회가 이 규약에 정해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으로 바꿈이 자연스럽다.

제 37 조 위원회의 회의

< 정부번역문 >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 회의의 최초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 38 조 위원의 선서

< 정부번역문 >

이사회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문제점 >

3행의 '선언' 보다도 '선서'로 함이 보다 자연스럽다.

제 39 조 임원

< 정부번역문 >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 (b) 이사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 40 조 보고서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 (a)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 발효후 1년 이내
 -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후 해당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조 제 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문제점 >

제 3항 2·3행의 '송부한다'는 'may... transmit'의 번역이나 '송부할 수 있다'라고 함이 옳다. '송부한다'는 강제규정이므로 오역이다.

제 41 조 통보절차

< 정부번역문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의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c)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토의를 가진다.

(e) "(c)"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f) 이사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g) "(b)"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h) 이사회는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i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 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 문 제 점 >

(a) 5행에서는 '설명서'이고 7행에서는 '해명서'로서 같은 문서의 이름이 다르다. 후자를 '설명서'로 함이 옳다.

제 42 조 특별조정위원회

< 정부번역문 >

1. (a) 제 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

에 기초하여 당해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 위원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 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 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a)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문제의 심의 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b)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c) 조정위원회가 "(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

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d) "(c)"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 41조에 의한 이사회회의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부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 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문제점 >

제 1항 (a) 4행의 '임명'은 '설치'로 바꿈이 자연스럽다. 위원회의 임명이란 적절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 43 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

< 정부번역문 >

이사회의 위원과 제 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 44 조 타규범과의 관계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 하에서의 인권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45 조 연례보고서

< 정부번역문 >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 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한다.

(6) 제 5 부

제 46 조 타규범과의 관계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47 조 민족자결권과의 관계

< 정부번역문 >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 문제점 >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1행의 '모든 사람'이란 '모든 민족'으로 바뀔지 옳다

(7) 제 6 부

제 6 부의 정부번역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하 그대로 전제한다.

< 정부번역문 >

제 48 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 49 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후에 발효한다.

제 50 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51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52 조

제 48조 제 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 조 제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 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 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 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 53 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에 기탁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 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서명자들의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일천구백육십육년 십이월 십구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규약에 서명하였다.
(서명란 생략)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의정서’에는 앞에서 지적한 것(예컨대 ‘인권이사회’)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하 그대로 실는다.

< 정부번역문 >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규약”이라 칭한다)의 목적 및 그 제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규약 제 4부에서 설치된 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한다)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규약당사국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로서 동국에 의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이사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 2 조

제 1 조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규약에 열거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은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제 3 조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른 통보가 익명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1. 제 3 조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규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이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그 문제 및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

한다.

제 5 조

1. 이사회는 개인 및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심리하지 않는다.
 - (a) 동일 문제가 다른 국제적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 (b) 개인이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이 규칙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4. 이사회는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이사회 의견의 견해를 송부한다.

제 6 조

이사회는 규약 제 45조에 의한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한다.

제 7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협약 및 그 전문기관 하에서 체결된 여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 8 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 9 조

1. 규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 10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11 조

1. 이 의정서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는 동 폐기가 발효하기 전에는 제 2조에 의해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제앰네스티는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본 소식지는 단지 몇몇 임원이나 실무진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정성어린 투고와 비판의 목소리로 이루어집니다.

- ▶ 분량 - 200자 원고지 7~8매 정도
- ▶ 형식 - 자유선택
- ▶ 내용 - 인권이나 국제앰네스티와 관련되는 사항, 기타 건의 사항
-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우체국 사서함15호
국제앰네스티 영남대그룹홍보국앞 (우편번호 712-010)

◎ 국제앰네스티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면 ①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소식지 및 기타 자료를 우송해 드리며 ② urgent action(특정양심수에 관한 안내서)을 참고로 "편지쓰기 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고 ③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제앰네스티는 함께 일할 회원을 기다립니다 !

본회의 활동이나 인권수호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 회원으로 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신청서를 기재한 후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외환은행	110-13-06191-4	앰네스티
우체국	703025-0011348	앰네스티
상업은행	709-05-000461	앰네스티
농협은행	761-01-035672	앰네스티
조흥은행	812-01-131928	앰네스티

* 아래주소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림 선.....

성 명 :
직 장(학교) :
주 소 :
전 화 번 호 :
원하는 방법 : 후원회원 회원가입 소식지구독
회원가입시 원하는 지역 : 서울 광주 대구 영남대 효성여대
후원시 원하는 지역 : 서울 광주 대구 영남대 효성여대
보내신 금액 및 이용 은행명 :
후원회원가입시 후원금액 :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우체국 사서함 15호
국제앰네스티 영남대그룹 홍보국앞 (우편번호 712-010)

“
소식지를
정기구독하실 분을
찾습니다.
“

본 지는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분(6회) 구독료 5,000원을 본회의 온라인 번호로 입금해 주시고 신청서를 기재한 후 우송해 주시면 최근 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 계좌 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외환은행	110-13-06191-4	앰네스티
우체국	703025-0011348	앰네스티
상업은행	709-05-000461	앰네스티
농협은행	761-01-035672	앰네스티
조흥은행	812-01-131928	앰네스티

- 영남대그룹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우체국 사서함 15호
국제앰네스티 영남대그룹 홍보국앞
712-010
-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SECRETARIAT
1 Easton Street London WC1X 8DJ
United Kingdom

국제앰네스티 소식지복간15호 발행일:1991년 8월 30일 발행인:김현수 편집인:국제앰네스티 영남대그룹 홍보국